19.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O 제출일자 : 2022년 4월 1일

O 제 출 자 : 송영헌 의원, 김원규 의원, 김태원 의원, 김혜정 의원

배지숙 의원, 정천락 의원, 홍인표 의원

O 회부일자 : 2022년 4월 5일

O 상정일자 :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교육위원회(2022년 4월 14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송영헌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「지방재정법」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,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O 법률 근거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O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근거를 규정함(안 제3조)

- O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O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O 중요재산의 보고, 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, 안 제8조)
- O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규정함(안 제9조)
- O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0조 ~ 안 제18조)
- O 지방보조사업의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19조)

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「지방재정법」에 규정된 지방보 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,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- O 각 조문별 주요 내용 및 검토결과
 - ▶ 본 개정조례안은 20개 조문과 3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 - ▶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명시하였음
 - 지방보조금 교부대상, 교부방법과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이 그 동안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운영되었으나, 지방보조금 예산의

편성,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보조금 관리 상위법령으로서의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별도 제정(시행 2021. 7. 13.)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「지방보조금법」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및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

- 다만, 상위법이 2021.1.12. 제정되고, 2021.7.13.부터 시행 되었음 에도 조례 개정 시일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음
- ▶ 안 제3조에서는 예산계상신청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,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, 국가 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에 계상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
-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상황 등과 같이 긴급 재난 발생 시 주요시책 시행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교부 등이 신속하게 이뤄 져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가 없음
- ▶ 안 제4조에서는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추진 기본방향, 지원대상 사업, 지원 및 선정절차, 수행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 공고하도록 했으나, 시급한 사업(조기집행, 타사업연계, 긴급 재해 등) 의 경우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▶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

하고 교부 간에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3조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), 제16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)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부 시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 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- ▶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하거나,
 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이 있는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, 지방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, 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도 정확한 후속조치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- ▶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을 제한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시 15일 이내에 보고하고, 매년 6월 및 12월에 변동 현황을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였으며,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보조금으로 취득 또는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 표기하도록 하였음
- ▶ 안 제9조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-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수급행위를 근절하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세 포상금 지급기준,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필요성이 있음
- ▶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명칭을 기존의 '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'를 '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'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였음
-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「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·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도록 함은 유사·중복적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판단됨
- 또한, 위원 구성에 있어 전·현직 공무원의 참여는 최소화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 및 다양한 계층이 위원을 구성·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아울러, 조례안 제13조 제4항에서 서면심의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, 공개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

▶ 안 제19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,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주민 자율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

O 종합 검토 결과

- ▶ 본 개정조례안은,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
- ▶ 특히,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,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실 질적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,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,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등을 통해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사후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O 없 음

5. 토론요지

O 없 음

6. 수정안요지

O 없 음

7. 심사결과

O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요지

O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O 없 음